

##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경미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|-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7876 |
|--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7. 7. 10.

발의자 : 박경미 · 신경민 · 김민기

박정 · 남인순 · 윤관석

김성수 · 안민석 · 민병두

김해영 · 권미혁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점자를 시각장애인들의 소통과 생활에 중요한 문자 수단으로 규정하고, 점자의 보급·발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. 특히 제12조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점자로 제작·보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교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등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 의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, 일선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650여명의 시각장애 교사들에게 필요한 ‘교사용 지도서’는 의무 점역 대상이 아닌 상황임. 한편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2조제2항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「점자법」에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

로 제작·보급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각장애인 교원의  
교육권 보장 및 능률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법률 제 호

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전단 중 “학생들이”를 “학생 및 교원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12조(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)</p> <p>① 교육부장관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<u>학생들이</u>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(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·보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| <p>제12조(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)</p> <p>① -----<br/>-----<br/>-----<u>학생 및 교원이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.<br/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|